

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5. 1. 26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건물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업비 지원과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은 특혜의혹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 또는 수정코자 함이며,
- 피해변상금의 예치기간이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(하자담보책임기간)과 상충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수정코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조례안 제8조제2호를 “삭제”하고, 제3호를 제2호로,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- 조례안 제8조제3호 중 “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”을 “제1호에 준하는 사항”으로 수정함.
- 조례안 제13조 중 “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”을 삭제하고 등록업체 다음에 “등”을 삽입한다.
- 조례안 제14조제3항 중 “18개월”을 “24개월”로 수정함.

3. 참고사항

-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

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1. 조례안 제8조제2호를 “삭제”하고, 제3호를 제2호로,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2. 조례안 제8조제3호 중 “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”을 “제1호에 준하는 사항”으로 수정
3. 조례안 제13조 중 “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”을 삭제하고 등록 업체 다음에 “등”을 삽입한다.
4. 조례안 제14조제3항 중 “18개월”을 “24개월”로 수정

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설치 및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"녹지시설"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·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.
 - 가. 나무·잔디·꽃·지피식물 등 녹지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
 - 나. 분수·조각·의자·그늘시렁 등 녹지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
 - 다. 기타 녹지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인공적인 시설물
2. "가로수"라 함은 도시경관 조성, 공해방지 및 시민보건 향상 등을 위하여 가로변 등에 조화있게 심은 나무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구미시(이하 "시"라 한다) 행정구역안의 녹지시설, 시가지내 녹지대, 화단, 생울타리, 가로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녹지시설의 관리) ①시장은 녹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수목전정·병해충 방제 등
 2. 시설지내 잔디깎기, 제초, 비료주기, 물주기
 3.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등 일반관리
- ②녹지시설이 훼손된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 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녹지시설을 재정비하거나 나무를 교체식재하여야 한다.

제5조(관리의무) ①시장은 녹지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녹화에 관한 상담·기술지도·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 관리책임자에게 녹지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

1.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녹지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 2. 기타 녹지시설을 손상하거나 변경한 경우
-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6조(가로수의 식재·관리) ①시장은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가로수의 식재방법,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시민관리제) ①시장은 가로수를 유지·관리함에 있어 공공기관, 학교, 단체, 기업체, 상가, 주민 등이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.

1. 물주기,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
 2.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
 3. 사고·재해 등으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
- ②시장은 가로수보호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1. 가로수를 훼손시키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
 2.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
- ③ 모든 주민들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·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·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, 장비, 가로수 부산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녹화지원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녹지시설 설치 등이 도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·꽃 등 녹지소재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시설은 제외한다.

1. 생울타리 조성, 벽면녹화,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

2. 공공기관, 학교 등의 담장을 헐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3.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담장헐기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

제9조(녹화장려) ①시장은 녹지시설의 수준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녹지시설 조성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 제공, 기술지도,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기념식수) 시장은 출생·입학·졸업·창사·결혼·회갑·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(시민참여) ①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초화류·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녹화사업에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2조(사무의 위임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13조(위탁관리) 시장은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, 농약 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록업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피해변상금 등) ①시장은 녹지시설물 또는 가로수가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피해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②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녹지시설 또는 가로수를 이식·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 또는 원인자가 원상복구시 이식의 경우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상당금액을 24개월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④ 피해변상금의 징수와 수목대체식재비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.

제15조(피해변상금 등의 강제징수)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변상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피해변상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.

제16조(가로수 등의 관리대장) 시장은 가로수·녹지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피해변상금 · 수목대체식재비 산정기준	
훼손자 부담금 (피해변상금)	1. 벌채, 수간절단, 뿌리뽑힘 등으로 정상 생육이 불가능하거나 생장이 가능할지라도 관상가치가 완전 상실된 때 : 도급공사설계비 전액변상 100% (피해변상금 제외수입) 2. 역지 등 가지가 많이 손상되어 관상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때 : 도급공사설계비의 50% (피해변상금 제외수입) 3. 수간박피, 가지손상등 외형만 손상된 경우, 반도복으로 바로 세우기 지주설치 등 복구가 가능한 경우 : 도급공사설계비의 20% (피해변상금 제외수입)
원인자 부담금 (수목대체식재비등)	4. 이식의 경우 (원인자 이식 원칙) 가. 수목 대체식재비 예치금액 : 도급공사설계비 ※ 도급공사설계비 :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
	5. 제거의 경우 (원인자 제거 원칙) 가. 피해변상금 납부금액 : 도급공사설계비 ※ 도급공사설계비 : 제외수입
· 피해변상금 · 수목대체식재비 징수기준 : 도급공사설계비에 상당한 금액 · 도급공사설계비 :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 (수목등 재료비 포함)하여 산정 · 수 목 비 : 가격정보(조달청)지 가격적용,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 적용 · 예치금납부방법 :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· 예치금예치기간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규정한 하자 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· 예치금환불 등 : 예치기간이 경과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 하여 환불 또는 세입조치	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녹화지원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녹지시설 설치 등이 도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·꽃 등 녹지소재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시설은 제외한다. 1. 생활타리 조성, 벽면녹화,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. 건물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. 공공기관, 학교 등의 담장을 헐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담장헐기 등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	제8조(녹화지원)----- ----- ----- -----. 1. 제정안과 같음 삭제 2. 제정안과 같음 3. 제1호에----- -----
제13조(위탁관리) 시장은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 공사업 면허업체,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록업체,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	제13조(위탁관리) ----- ----- ----- 식물방제업 등록업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14조(피해변상금 등) ①시장은 녹지시설물 또는 가로수가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피해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녹지시설 또는 가로수를 이식·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 또는 원인자가 원상복구시 이식의 경우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상당금액을 18개월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 ④ 피해변상금의 징수와 수목대체식재비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.	제14조(피해변상금 등)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----- ----- --- 24개월간 ----- -----. ④ 제정안과 같음 -----.